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253호 2017. 3. 20(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0호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0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4호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 고시 ----- 8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88호	공원운동장 사용료 공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19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2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22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3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2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32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30호

##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3.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서구 당하동 산217-14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601	6	국지 도로	147	소로2-18	- (당하동 산217-18)	일반 도로	-	-	-

## ○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3-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li>- 연장(L) : 147m</li> <li>- 폭(B) : 6m</li> </ul>	협소한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 사용 중인 도로를 연결하고 낙후된 기반시설의 정비 및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3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3.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 서구 당하동 1067-1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서인천개발(주)(대표 신종석, 박희용)
3. 사업시행계획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67-1 외 2필지
  - 나. 대지면적 : 24,787m<sup>2</sup>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89,805.2832m<sup>2</sup> (지하2층, 지상18층)
  - 라. 용도 : 공동주택 8개동(아파트) 5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용검사예정일 : 2017.09.30.
4. 변경사항 : 사용검사예정일 변경(2017.08.30. → 2017.09.30.)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32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0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6호(2016. 1. 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2-101호선, 사업명 :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3.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101호선)
  - 명칭 :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192.9m, B=8m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소로	2	101	8	국지 도로	192.9m	오류동 395-79	오류동 산182-4	일반 도로	2016.1.11.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소로	2	101	8	국지 도로	192.9m	오류동 395-79	오류동 산182-4	일반 도로	2016.1.1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33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3. 1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승학로402번길 29-3 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3. 1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164호

##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 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32조 및 제89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위탁하여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0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 3. 2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위탁업무 :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2. 위탁기간 : 2017. 2. 28. ~ 2017. 12. 31.(계약 미해지 시 갱신)
3.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32조 및 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4. 위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5. 위탁 상세내용

위탁기관	위탁내용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매년4시간)</li> <li>• 방법교육(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li> <li>•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li> </ul>	상세 교육계획, 일정 및 장소 등은 센터에서 별도 공지

6. 공고기간 : 2017. 3. 20. ~ 2017. 4. 7.
7. 공고방법 : 구보 게시
8. 문의사항 :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032-560-473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388호

## 공원운동장 사용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대상공원 : 서곶근린공원, 능내근린공원
2. 대상시설 : 운동장
3. 운동장 사용료

공원명	운동장 면적 (㎡)	사용료(원/2시간)							
		평일				휴일			
		체육경기		체육경기 外		체육경기		체육경기 外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서곶근린공원	5,400	20,000	40,000	-	80,000	30,000	60,000	-	140,000
능내근린공원	5,400	20,000	40,000	-	80,000	30,000	60,000	-	140,000

※ 능내근린공원 운동장은 야간조명시설 사용시 20,000원(시간당) 별도 부과

4.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용 기준 및 감면 등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적용
5. 적용시기 : 2017. 5. 1일 사용부터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40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3.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행제도 운영에 맞춰 위원의 자격 및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규칙 개정

### 2. 주요내용

- 평가위원의 자격 변경(제3조)
  -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를 평가위원 자격에서 삭제
  -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을 평가위원 자격으로 추가
-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제4조)
  - 위원장 선출방법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

-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32-560-4153 (FAX 560-2720)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개정)이유

-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행제도 운영에 맞춰 위원의 자격 및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규칙 개정.

### 2. 주요내용

- 평가위원의 자격 변경(제3조)
  -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를 평가위원 자격에서 삭제
  -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을 평가위원 자격으로 추가
-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제4조)
  - 위원장 선출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
-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 해당분야”를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제3조제1항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기타방법”을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고”를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출시”를 “제출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촉에”를 “위촉 해제에”로, “해촉된”을 “위촉 해제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을 “(위원의 제척 및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평가점수 산정)”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천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 기준 범위

에서 해당 평가를 위해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 공고내용”을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처음 입찰공고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남, 여)
------	--------

(별지 제1호서식)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

작성자 :

(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관 귀하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부터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생략)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⑦ (생략)

제5조(위원의 제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출 시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촉  
해제에 -----  
-----  
-----  
-----  
--- 위촉 해제된 -----.

⑥·⑦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생략)

<신설>

제6조(평가접수 산정)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정한 별표 1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배점 한도는 분야별 10점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4. -----  
-----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천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  
-----  
-----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범위-----  
-----.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 기

<p><u>제8조(시행세칙)</u>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u> 등에 따른다.</p>	<p><u>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해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 기준에 따른다.</u></p> <p>② <u>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u></p> <p><u>제9조(시행세칙)</u> -----</p> <p>-----</p> <p>-- <u>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u> -----</p> <p>-----.</p>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7호, 2017.1.26., 타법개정]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2016.9.13.>
- ② 삭제 <2012.5.23.>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⑤ 삭제 <2016.9.13.>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6.9.13.>
-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⑫ 삭제 <2016.9.13.>

⑬ 삭제 <2016.9.13.>

[전문개정 2010.7.26.]

##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3.20~2017.4.10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3.20~2017.4.10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419호

##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일반용지(C)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안)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획지분할가능성)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획지분할가능성)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5	3,297.3	1	536.9		35	3,297.3	1-1	282.0	
							1-2	254.9	
		2	234.8				2	234.8	
		3	239.0				3	239.0	
		4	192.5				4	192.5	
		5	439.0				5	439.0	
		6	609.2	2			6	609.2	2
		7	310.4				7	310.4	
		8	337.2				8	337.2	
		9	398.3		9	398.3			

나. 일반용지(C)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35	1 → 1-1, 1-2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II.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422호

##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7. 3.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위 치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B-2	60	3	5,082.2		B-2	60	3-1	1,002.3	
							3-2	2,228.9	
							3-3	1,851.0	
소계			5,082.2		소계			5,082.2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423호

##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7. 3.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A-2	77-1	3-1	541.1		A-2	3-1	401.5	
		3-2	246.0			3-2	385.6	
소계		787.1			소계		787.1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3)